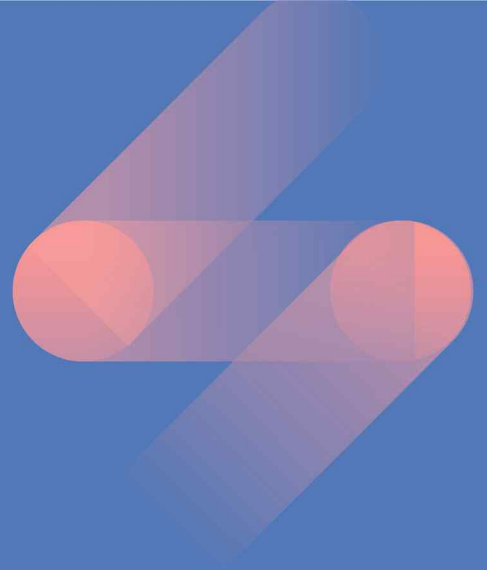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1 2024서울조정992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손해배상 200만 원)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과를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정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명해진 유튜버에 대한 근황 및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을 게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서 언급된 유튜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신청인이 SNS에 공개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비식별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미흡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외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기사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꾸준히 보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기사가 계속 게시되었고 조정신청 후에야 기사삭제 조치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도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액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 및 열람차단,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1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취하(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피해가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장원영과 합의 실패’ △△수용소 박□□ 신상·얼굴 싹 털린 후 오늘 자 근황 공개됐다 (+사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3월 6일 자 <‘장원영과 합의 실패’ △△수용소 박□□ 신상·얼굴 싹 털린 후 오늘 자 근황 공개됐다 (+사진)> 라는 제목으로 박□□의 얼굴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지가 게재한 인물 사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박□□가 아닌 일반인 사진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 섹션 기사 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이후 최초 24시간 동안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이 드러나는 모든 기사와 사진 등 일체 자료를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아래 신청인 대리인의 계좌로 금 2,000,000원정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2 2024서울조정1432·1433·1434,
2024서울조정1435·1436·1437(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A 인터넷신문, B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열람차단, 손해배상 500만 원)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기업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열람차단 및 500만 원 손해배상으로 직권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C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정' 의견 제시를 미끼로 갑질을 일삼았다. C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처럼 하다가 감사 종료를 앞두고 돌연 '한정' 또는 '의견거절'과 같은 '비적정' 의견으로 결론을 내거나, 무리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피감사기업들이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따로 지출하도록 했다.

또한 C 회계법인은 피감사기업이 고용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적격성 확인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회계감사를 연장한다며 감사 비용을 증액해 청구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회계법인은 외부조사인 선임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비용 소모가 큰 조사 방법은 회계법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감사기관이 선택하는 사항인바, 회계법인이 감사 진행 중 재무제표에서 비정상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지적하면 피감사기업은 상장심사 통과나 주가방어 등을 위해 스스로 합당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조사 방법을 선택하든 회계법인에게 별도로 이익되는 바도 없어 특정 조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감사에서 '의견거절'이 제시된 D 기업의 경우 보도에 제시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의견거절'이 결정됐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지적 사항은 해당 기업이 선임한 외부조사인이 적발한 것으로, 신청인 회계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반드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기에 담당자가 감사 종료 전 '적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확정을 보장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감사 비용은 증가한 시간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정상 비용보다 적게 청구했다가 해당 기업이

전액 지불 의사를 밝혀 정상 비용을 청구했던 만큼 신청인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청인 회계법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들과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들어간 기사를 오래 노출해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면서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면 정정보도는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액으로 최소한 2천만 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계법인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고 그 진위의 확인과 반론 확보를 위해 신청인 측에 연락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지만 반론보도나 열람차단 등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D 피감사기업의 재무팀 전원 사직', '감사의견 번복' 등의 보도 내용이 확인된 사안인지 지적했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소정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정정보도보다는 열람차단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으나,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차이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분쟁 건 등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중재부는 피신청인 보도에 고의 및 악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후 피해구제 노력 등 감액 요소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차단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 분쟁 건은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열람차단

- A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B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더 이상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부제소(형사고소 취하)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들과 관련한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